

2018년도 충청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8년도 충청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충청북도지사

I 선발예정인원

구분	채용분야	채용계급	구분모집	거주지 제한 및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명)			
				계	도내거주자	해당 시·군거주자	
계				229	204명(전국96)	25명	
공개 경쟁 채용	소 방	지방소방사	남성	126	도일괄101	보은군 5, 옥천군 5 영동군 5, 괴산군 5 단양군 5	
			여성	7	도일괄 7		
경력 경쟁 채용	구조	지방소방사	남성	58	도일괄58 (※ 거주지 제한 없음)		
	구급	지방소방사	성별제한없음	26	도일괄26 (※ 거주지 제한 없음)		
	구급상황관리	지방소방사	성별제한없음	2	도일괄 2 (※ 거주지 제한 없음)		
	정보통신	지방소방사	성별제한없음	3	도일괄 3 (※ 거주지 제한 없음)		
	소방정	기관사	지방소방사	성별제한없음	2	도일괄 2 (※ 거주지 제한 없음)	
		항해사	지방소방사	성별제한없음	2	도일괄 2 (※ 거주지 제한 없음)	
	항공운항관리	지방소방교	성별제한없음	2	도일괄 2 (※ 거주지 제한 없음)		
법 무	지방소방경	성별제한없음	1	도일괄 1 (※ 거주지 제한 없음)			

II 시험일정

구분	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18. 2.26.(월) ~ 3. 2.(금) 09:00~21:00 (취소기간 : 2.26.(월) ~ 3. 9.(금) 21:00까지)	
필기시험	3.30.(금)	4. 7.(토) (가산점등록기간 : 4. 7. ~ 4. 11.)	5. 4.(금)
체력시험	5. 4.(금)	5.14.(월) ~ 5.18.(금)	5.25.(금)
서류전형	5. 4.(금)	5.23.(수) ~ 5.25.(금)	6.29.(금)
신체검사	5.25.(금)	6. 5.(화) ~ 6. 8.(금)	6.15.(금)
면접시험	6.15.(금)	6.18.(월) ~ 6.21.(목)	6.29.(금)

※ 비 고

- 1) 시험장소와 각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시험채용」란에 공고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2) 필기시험성적 조회는 불합격자는 필기시험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정한 기간 내에만 조회 가능합니다.(원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접수센터"에서 조회 가능)
- 3)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해당 시험의 가산점 등록기간 내에 가산 해당사항(취업 지원 및 의사상자 등, 기술자격·면허증의 명칭과 증명번호 등)을 등록하여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출제문제 문의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 2018. 4. 7.(토) 12:00 ~ 4. 10.(화) 18:00 / 4일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http://119gosi.kr)
 ◇ 신청절차 : 인터넷 접속(http://119gosi.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질의응답
 → 필기시험 문의 → 문의서 첨부*
 * 응시자는 2018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문제 문의서(【붙임7】) 작성 첨부
 ◇ 문의내용 : 필기시험 출제문제 오류, 복수정답, 정답없음 등 질의
 * 채용시험 문제공개 요구 또는 인터넷 신청이 아닌 전화문의는 받지 않음

- 5)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 6) 응시자 증빙서류(법무분야 포함)는 원서접수 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지정하는 날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Ⅲ 시험방법

구 분	제1차시험	제2차시험	제3차시험	제4차시험	제5차시험
소방사·교	필기시험	체력시험	서류전형	신체검사 (인.적성검사 포함)	면접시험
소방경	-	-	서류전형	신체검사 (인.적성검사 포함)	면접시험

※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해야만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가. 제1차시험 : 필기시험

- 1) 시험시간 : 공개경쟁채용시험 100분(10:00~11:40), 경력경쟁채용시험 60분(10:00~11:00)
- 2) 출제문항 및 배점 : 각 과목별 20문항, 4지 택1형이며, 100점 만점
- 3) 시험과목 : 공개채용 5과목, 경력경쟁채용 3과목

구 분		필기시험 과목
공개경쟁채용시험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경력경쟁 채용시험	소방사	◆ 국어, <u>생활영어</u> , 소방학개론
	소방교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소방사로 경력경쟁채용 등을 하는 경우 필수과목 중 "영어"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함

- 4) 시험문제 : 중앙소방학교 위탁 출제(시험문제 비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지 회수)

5) 선택과목 출제범위

과 목	출 제 범 위
소방학개론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앞 법률들 각각의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사 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 학	물리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수 학	수학 I,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I

6)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에 따른 유불리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 적용 : **【붙임 2】**

7)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2~3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분야별 선발예정인원 **10명미만은 3배수**, 그 외는 **2배수** 선발)

나. 제2차시험 : 체력시험

1) 시험종목 : 6종목 (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2) 종목별 평가기준 및 측정방법 : **【붙임 3】**, **【붙임 3-1】**

3) 합격자 결정 :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체력시험에 합격하였어도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될 수 있음

4) 도핑테스트 :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7% 무작위 선정(소수점 절사)

※ 도핑테스트 시행절차,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등 : **【붙임4】**

다. 제3차시험 : 서류전형

1) 제출대상 및 방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지정한 날짜에 직접 제출

2) 합격자 결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판단

라. 제4차시험 : 신체검사

1) 신체검사방법 :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지정하는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 실시 (수수료 응시자 부담)

※ 색각이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후 응시하여야 함

2)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가 적합한 자로 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의 "별표3"에 의함(**【붙임 5】**참조)

3) 「소방공무원임용령」제36조 및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 5에 근거하여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함 (인·적성검사 일시·장소는 체력시험 발표시 안내)

마. 제5차시험 : 면접시험

1) 면접시험 : 5개 평가요소에 대하여 1단계(집단면접)과 2단계(개별면접) 실시

단 계	평 가 요 소	평가점수(60점)
1단계 집단면접	1.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10점
	2.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10점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점
2단계 개별면접	4.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0점
	5.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10점

2) 합격자 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3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

바. 최종합격자 결정

- 1)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 성적 75%, 체력시험 성적 15% 및 면접시험 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 결정. 단, 소방경(법무분야, 변호사)은 면접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 성적(100%)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 결정
- 2)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함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IV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 당해시험의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 시 동법 제89조에 따라 취업제한 위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2)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5조에 의하여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은 응시 가능합니다.

나. 응시연령

구 분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소방사(공개경쟁)	18세 이상 40세 이하	1977. 1. 1.~2000.12.31.
소방사·교(경력경쟁)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7. 1. 1.~1998.12.31.
소방경(경력경쟁)	23세 이상 40세 이하	1977. 1. 1.~1995.12.31.

※ 응시상한 연령의 연장

「병역법」 제74조의2 또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채용 시 우대를 받는 사람은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다.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 제한

1) **공개경쟁채용시험** : 'I. 선발예정인원'의 거주지 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주지제한 및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도내거주자	해당 시·군거주자
204명(전국96)	25명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2018년1월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자(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3년 이상인 자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2018년1월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자(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8년1월1일 이전까지,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3년 이상인 자

※ 거주지 제한 확인 기준

가)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 시·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됩니다.

*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관할구역이 종전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제외되어 세종특별자치시로 된 지역(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의 거주경력(거주기간)은 충청북도 거주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2) **경력경쟁채용시험** : 거주지 제한 없음

라. 자격면허증, 경력 등의 응시자격

1) **공통자격** :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단, 소방경(법무분야, 변호사)은 제외

※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2)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분야별 자격 및 경력**(당해 시험의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

구분	채용계급	채용분야	응시자격
경력경쟁채용	소방사	구조	○ 군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역자 또는 전역 예정자(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 특수전부대 ① 특수전부대(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 공정통제사 ② 특수임무대(국방부) : 정보사, 특공여단, 특공연대, 수방사 35특공대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헌병 특수임무대, 국화사24특임대대 ③ 기타 특수전부대 : 국방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1부"와 해당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장의 『특수전임무수행 확인서』 등 공적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된 경력

구분	채용계급	채용분야	응시자격	
경력경쟁채용	소방사	구급	<p>○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p>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p> <p>②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p> <p>③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 경력</p> <p>④ 「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에서 근무한 경력</p> <p>⑤ 「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p> <p>⑥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p> <p>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p> <p>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p> <p>⑨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보조업무로 근무한 경력 (구체적 복무 확인서 필요)</p> <p>⑩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p> <p>⑪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p>	
		구급상황관리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구급상황관리분야의 근무경력 3년 이상이고, 그 중 구급상황관리사 5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응급구조사1급 또는 의사,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정보통신	○ 정보통신 직무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정보통신 관련부서에서 정보통신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정보통신 직무분야 자격증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통신설비기능장	
		소방정(기관사)	○ 6급 이상의 기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함.	
		소방정(항해사)	○ 6급 이상의 항해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함.	
		소방교	항공운항관리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항관리 또는 항공관제 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고, 그 중 임용예정 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소방경	법무(변호사)	○ 「사업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 또는 「변호사시험법」에 의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 비 고

- 1) 공통자격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는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
- 2)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자격·면허증, 학력, 경력 등)의 기준일은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
- 3) 경력경쟁채용시험에는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으며, 필기시험 합격 후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가)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합니다.
 - 나)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 후의 해당분야 경력"이라 함은 자격증 또는 자격증 취득에 따른 기술을 직접적으로 활용하여 수행한 업무를 말합니다.
 - 다) 경력증명서 제출 시에는 발급기관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군 경력증명서(육·해·공군 참모총장 발급)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됩니다. 고의로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사) 외국어로 된 서류는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신체조건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

부분별	합격 기준
체 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3>에 의합니다.【붙임5】

V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1522-0660)에 직접 접속하거나,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의 「시험채용」란에서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 접수센터' 배너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까지입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1) 인터넷 접수 시에는 응시수수료(소방사,소방교 : 5,000원, 소방경 : 7,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2)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단, 원서접수 취소기간 종료 후 저소득층 여부를 확인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 3)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합니다.
 - 가)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 나)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 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취소마감일 내에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 ※ 공휴일·토요일에는 응시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1)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합격 후 임용후보자 등록 시에도 동일원판 사진이 사용되니 규격에 맞는 사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식별이 어려운 사진일 경우 신분확인을 위한 별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 : 해상도 100dpi 이상, 3.5cm×4.5cm기준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미착용 등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2) 원서접수 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결제 후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있으나, 응시분야는 변경이 불가하며, 응시분야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 ※ 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며,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취소·접수하는 것으로 가능
- 3) 원서접수기간 및 취소마감일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4)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또한 2018년 말 기준으로 원서접수센터의 개인정보가 폐기되므로 응시원서 등은 수험생 개인이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5) 가산점 등록은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가산점 등록기간)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가산비율을 확인하고 취업지원, 기술자격·면허증의 명칭과 증명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필기시험의 OMR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6) 응시자격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지정하는 날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VI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면허증) 가점은 각각 인정 · 자격(면허)증, 사무관리 등 가산점은 분야별로 유리한 것 1개 (서로 다른 2개 분야는 합산), 최대 5%까지 인정 ※ 자격증 등 소지자 가산점은 공개경쟁채용시험만 해당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나~바' 참고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자격증 등 소지자	자 격 증 (면허증)	과목별 만점의 1%~5%	
	사무관리	과목별 만점의 1%~3%	

나. 취업지원 대상자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단계별 시험에서 과락을 면한 경우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2)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에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의사상자 등 대상자

- 1)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에 의거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는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를 가산합니다.
- 2)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56조에 따라서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의사상자 등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자격증 소지자(공개경쟁채용시험에만 적용함)

- 1) 「소방공무원임용령」제42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만점의 일정 비율(1~5%, 별표6)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2) 자격(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가점 적용 자격(면허)증 세부 현황 : 【붙임 6】)

분야 \ 비율	5%	3%	1%
자 격 증 (면허증)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기능장 2. 1급 ~ 4급 향해사·기관사·운항사 3. 사업용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4. 의사, 변호사 5. 소방시설관리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향해사·기관사 3.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기능사 2.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대형운전면허 4. 응급구조사(2급)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가산점 등록기간)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가산비율을 확인하고 취업지원, 기술자격·면허증의 명칭과 증명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해당 시험의 가산점 등록기간 내에 미등록(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가산특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처리 됩니다.(필기시험의 OMR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VII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가. 본 시험계획은 우리 도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 「시험채용」란에 게시합니다.
- 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규에 따라 결정됩니다.
- 다. 응시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등 자격요건이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시·군 지역제한 선발 합격자는 해당 시·군 소방서에 임용되며, 우리도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등에 의거 임용된 날부터 별도 지정한 기간동안 최초 임용된 지역외로 전출되거나 최초 임용된 기관 외로 전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마.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응시자 주의(유의)사항 미 준수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바.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사.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종사자(감독관, 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아. 무선호출기, 핸드폰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시험당일 시험실내 반입을 금지할 예정입니다.(시험시간 중 휴대 적발 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 자. 임용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
- 차. 시험문제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위탁 출제하며,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회수하며, 문제 등을 응시표 등에 이기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카.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및 제89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 바.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9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82조제1항의 비위면직자 등이 같은 조 제2항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 「시험채용」란을 참고하시고, 충청북도 소방행정과(043-220-48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분 야		내 용
소방조직	1) 소방조직	- 소방의 발전 과정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질,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점검, 소방용 기계·기구류의 제조·검정)
	2) 소방기능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활동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 구조·구급 행정관리와 구조·구급 활동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재난관리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긴급구조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연소이론	1) 연소개요 등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2) 연기 및 화염	- 연기의 정의 - 연소 가스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3) 폭발개요 및 분류	- 폭발의 조건 -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폭연과 폭굉 - 가스 분진 분해 폭발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화재이론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2) 건물화재의 성상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3) 위험물화재의 성상	- 위험물의 류별(제1류 ~ 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4) 화재조사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소화이론	1) 소화 원리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소화 방법(냉각, 질식, 제거, 부촉매 효과)별 소화 수단
	2) 소화약제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3) 소방시설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붙임 2】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2제1항 관련)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text{응시자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 \div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 \times 10 + 50$$

비고

1. 위 표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sqrt{\frac{(\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2 \text{의 총합계}}{\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 1}}$$

- 2.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는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가 있는 선택과목의 경우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 3.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 산출 시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 4. 조정점수의 산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붙임 3】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 관련)

종목	성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kg)	남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여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여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앞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남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여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cm)	남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여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 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남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비고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붙임 3-1】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관련)

종 목	측 정 방 법 등
<p>악 력 (k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p>배 근 력 (k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p>앞아랫몸 앞으로 굽히기 (c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 cm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었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종 목	측 정 방 법 등
제자리 멀리뛰기 (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 cm ○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윗몸 일으키기 (회/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왕복오래 달리기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절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코스의 양쪽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비 고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붙임 4】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충청북도지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6호 관련,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한 약물 및 방법은 금지됩니다(붙임 4-1 참고)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충청북도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로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 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지사는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 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로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 지정일 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 붙임 4-1.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4-2.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붙임 4-1】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I. 금지약물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¹⁾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drostanolone ▶methenolone
 - ▶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 ▶stanozolol
 -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Clenbuterol

2. 이뇨제 : 총 3종

- ▶hydrochlorothiazide ▶chlorothiazide ▶furosemide

3. 흥분제 : 총 3종

- ▶methylhexaneamine(dimethylpentylamine)
- ▶methylephedrine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4. 마약류 : 총 11종

- ▶Buprenorphine ▶dextromoramide ▶diamorphine(heroin)
- ▶fentanyl 및 유도체 ▶hydromorphone ▶methadone
- ▶morphine ▶oxycodone ▶oxymorphone
- ▶pentazocine ▶pethidine

II. 금지방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1)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 응시자 인적사항

1. 성명: _____	2. 성별: 여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3. 생년월일: _____	4. 응시번호: _____
5. 핸드폰: _____	6. 이메일: _____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십시오

※ 진단 증빙자료(진단서, 처방전, 소견서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1회 응급

기간(주/월) _____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명: _____ 전공분야: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이메일: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5. 응시자 서약

본인, _____ 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 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 _____ 날짜: _____

부모/보호자 서명: _____ 날짜: _____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 제출해야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5]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제3항 관련)

구 분	내 용
1. 일반 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야병·트리빠노썸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2. 비·구강· 인후기관 계통	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 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 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 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 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계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구 분	내 용
7. 생식 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구 분	내 용
12. 귀	가. 두 귀의 교정청력이 각각 40dB 이상인 사람
13. 눈	가. 두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3 미만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14. 정신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15. 혈압	가.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나.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16. 운동신경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붙임 6]

공개경쟁채용자의 가점 적용 자격(면허)중 세부 현황

비율	0.5할	0.3할	0.1할
① 자격증 (면허증)	기술사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철도차량,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차량, 화공,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인간공학, 전기안전, 기상예보,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	기사 :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승강기,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생물공학,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 임베디드,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인간공학, 화재감식평가,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기상, 기상감정, 원자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농업기계, 생산자동화,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화약류제조, 위험물,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기기,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화재감식평가,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능장 :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설기계정비,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위험물,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가스, 에너지관리	기사	기능사 : 거푸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실내건축, 운수운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기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농기계정비, 생산자동화, 반도체장비유지보수, 철도차량정비, 동력기계정비, 선체건조, 전산응용조선제도,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화학분석, 위험물, 전기, 철도전기신호, 광학, 의료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전자카드, 정보기기응용, 정보처리,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가스,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1급 ~ 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대형운전면허
	의사, 변호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2급)
②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직무분야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기상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면허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0.5할을 초과할 수 없음

